

# 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9.

제 출 자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농촌고령화, 인수도멸에 따른 농업인력 지원사업과 고령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농업·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
- 나.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농정분야 보조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신설(안 제2조 제5호~제6호)
- 나. 민·관협치 농정확대 조항 신설(안 제3조 제2항)
- 다. 군에서 지원(예정)하는 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 및 마련
- 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(안 제6조 4호, 12호)
  - 농업인 및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각호의 규정 신설(안 제6조 25호~26호)

라.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책심의회 조항  
신설(안 제7조)

마. 농업·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 조항  
신설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(정책심의회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08. 14. ~ 2023. 09. 0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일부 반영

## 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**품목별농업인연구회**”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,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.

6. “**농업인력**”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**군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의 협치를 통해 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**

제6조제4호 중 “**수출**”을 “**국내외**”로, “**화훼**”를 “**화훼, 특용작물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**2세**”를 “**가업승계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**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따른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**

## 의 제공사업

26.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 
제7조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정책심의회) ① 군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“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2.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
3.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

③ 정책심의회는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되,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신청)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·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5. ~ 10. (생략)</p> <p>제3조(군의 책무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“품목별농업인연구회”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,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.</u></p> <p><u>6. “농업인력”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7. ~ 12. (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3조(군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군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의 협치를 통해 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농업·농촌 진흥 및 농업</p>
제6조(농업·농촌 진흥 및 농업	제6조(농업·농촌 진흥 및 농업

경쟁력 강화)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, 농촌지역개발, 자립기반 확충, 농업인의 복지증진,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, 과수,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
5. ~ 11. (생략)
12. 2세 농업인의 전업농 육성사업
13. ~ 2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25. (생략)

<신설>

경쟁력 강화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국내외 -----  
-- 화훼, 특용작물 -----  
--
5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가업승계 -----  
--
13. ~ 24. (현행과 같음)

25. 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따른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사업

26.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

27. (현행 제25호와 같음)

제7조(정책심의회) ① 군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

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“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2.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
3.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

③ 정책심의회는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 (생략)

<신설>

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
제9조(지원신청)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농업인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연구회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·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5조(정책심의회)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2